

자동차등록증

제 2008-008705 호

최초등록일: 2008 년 03 월 04 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조

- 정기검사 미필시 법 제37조 제3항에의거 번호판 영치됨
- 등록증 수령 즉시 번호판 및 봉인 부착 위반시 50만원 과태료 (신규 및 등록번호 변경차량에 한함)
- 개인, 사업자는 변경사유 발생시 15일 이내 신고
- 소유자 사망시 3개월 이내 상속이전 (공동명의 포함)

2008 년 03 월 04 일

광주광역시서구청장



2.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㉓ 구분	㉔ 번호판교부일	㉕ 봉 인 일	㉖ 교부대행자확인
2008-03-04	2008-03-04		

4. 검사유효기간 (1)				
㉗ 연월일부터	㉘ 연월일까지	㉙ 검사 시 행장소	㉚ 주행거리	㉛ 검사 책임자확인
2008-03-04	2009-03-03			
2009-03-04	2010-03-03			
2010-03-04	2011-03-03			
2011-03-04	2012-03-03			
2012-03-04	2013-03-03			
2013-03-04	2014-03-03			
2014-03-04	2015-03-03			
2014.09.04 부터		146,209km		
2015.03.03 까지		시운전 (연비 5.7)		

4. 검사유효기간 (2)				
㉗ 연월일부터	㉘ 연월일까지	㉙ 검사 시 행장소	㉚ 주행거리	㉛ 검사 책임자확인
2022. 09. 04	2023. 03. 03		257419	
2023. 03. 04 ~ 2023. 09. 03			258054	중합
2023. 09. 04	2024. 03. 03		259165	
2024. 03. 04	2024. 09. 03		259324	
2024. 09. 04	2025. 03. 03		259498	
2025. 03. 04	2025. 09. 03		260440	
2025. 09. 04 ~ 2026. 03. 03			261151	

4. 검사유효기간 (3)				
㉗ 연월일부터	㉘ 연월일까지	㉙ 검사 시 행장소	㉚ 주행거리	㉛ 검사 책임자확인
2025. 09. 04	2026. 03. 03		261151	
2026. 03. 04	2026. 09. 03		261001	
2026. 09. 04 ~ 2027. 03. 03			230004	